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29 _ 2017년 9월

이 사람의 향기 I

중증 자폐인과 가족에게 국가는 존재하는가?
유영복 씨 / 성인 자폐인 아버지

포커스 I

제도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인권
정신장애인은 복지시설에 들어오지 말라고?
2017년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분석

이슈포착 I

글로벌 의제 속 장애인의 인권

전화기와 농인



전화 개통(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우리는 그를 전화기 발명가로 기억한다. 사실을 말하면, 벨의 발명품은 전화기뿐이고 그의 직업은 농학교 특수교사였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농교사였다고 하니, 그는 농교육가 집안에서 자란 셈이다. 벨은 자신이 가르치던 농인 소녀 마벨과 결혼했는데, “아내가 집안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보조도구를 만들려다가 전화를 발명했다.”고 자서전에 썼다.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탄생한 전화기는 청인들의 필수적인 생활도구가 된 반면 농인들은 이후 100년 넘게 전화기에 접근할 수 없었다. 전화기 때문에 청인-농인의 정보격차는 훨씬 더 심해졌다. 그래서일까? 1917년 어느 신문과 인터뷰 도중에 벨은 “나를 전화기 발명가가 아니라 농교사로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29 _ 2017년 9월

CONTENTS

| | | |
|----|----------|---|
| | 이미지 단상 | 전화기와 농인 |
| 02 | 편집자 편지 | 당사자가 결정하고 책임까지 지는 장애 정책을 바라며 |
| 04 | 칼럼 | 장차법 실효성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지에 달렸다 |
| 10 | 의정돌보기 | 법률 및 자치법규에서 장애인지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
| 13 | 이 사람의 향기 | 중증 자폐인과 가족에게 국가는 존재하는가? 유영복 씨 / 성인 자폐인 아버지 |
| 21 | 포커스1 | 제도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인권 |
| 29 | 포커스2 | 정신장애인은 복지시설에 들어오지 말라고? |
| 35 | 포커스3 | 2017년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분석 |
| 40 | 이슈포착 | 글로벌 의제 속 장애인의 인권 |
| 44 | 생활속 모니터링 | 활동가의 눈으로 본 '생활 속 모니터링' |
| 49 | 영화평 | 문화적 다양성에서 한걸음 더! - 류미레 (다큐멘터리 감독) |
| 52 | 포럼은 지금 | |

당사자가 결정하고 책임까지 지는 장애 정책을 바라며

9월 16일 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은 ‘천사 목사’와 ‘정의 사제’로 가장한 두 성직자가 장애인을 내세워 어떤 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못해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미혼모라고 주장하는 목사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 파문당한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전북 전주시에 주간보호센터 2곳을 차려 장애인들을 돌보는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꾸며놓고, 사실은 갖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애 아이를 입양하여 ‘천사 목사’인 척하면서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년씩 방치해두었습니다. 센터 종사자들에게 후원금과 목사의 SNS에 칭찬 댓글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신부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유력인사들을 센터로 끌어들이면 목사가 그들의 성기에 봉침을 놓고 나체 사진을 찍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는 엽기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목사가 낳은 아들의 아버지가 음탕한 신부일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대목에서 충격이 극에 달합니다.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목사는 전주 일대에만 주택 다섯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간보호 센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목사를 언론들은 ‘한국의 테레사 수녀’라고 치켜세우고,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상을 주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사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상’, ‘창조경영인 대상’, ‘대한민국청소년대상’, ‘한국재능나눔대상’,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소비자만족 히트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대상’,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혁신 한국인’ 등 무수한 상과 칭송을 선사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운영한다고 말만 해도 무조건 선한 사람으로 여기는 고질적인 편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번 <모니터링 리포트>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문제를 주요하게 다룹니다. 전국의 주간보호센터들이 이용자의 강제 퇴소를 정당화하는 매우 부당한 ‘이용 계약서’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가 어떠한지 <포커스 1>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향기>에서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런 계약서에 서명하길 거부하고 투쟁에 나선 자폐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포커스 2>는 정신장애인 출입을 제한하는 전국의 복지시설 설치 조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실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복지시설들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문화의집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포커스 3>에서는 올해 중앙정부의 장애 관련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장애 관련 예산의 72%가 보건복지부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고용, 교육, 교통, 여성, 행정안전 등 다른 부서의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의정 돋보기>는 올해 초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를 예를 들어 법률 및 자치법규에서 장애인지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펍니다.

마지막으로 <이슈포착>은 현재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쟁점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를 위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장애인들도 국제 쟁점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외부 전문가의 기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예전에 최창현 씨가 필자에게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증 뇌성마비인이자 장애인운동가인 최 선생은 입으로 조종하는 휠체어를 몰고 유럽 대륙을 횡단하여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그가 말하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길을 가면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을 칭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장애인을 칭찬하더라."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성직자든, 정치인이든, 장삼이사든 장애인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 너도나도 무턱대고 칭찬합니다. TV에 나온 목사도 신부도 이런 대중의 심리를 교활하게 악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애 당사자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까지 지는 방향으로 장애 정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서비스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인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돕니다. 독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윤삼호**

장차법 실효성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지에 달려있다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1999년 한 부장판사는 은퇴한 미국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을 촉구하였다. “나는 재직 중에 중도의 편에서 사건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강자의 편을 들었고, 약자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중도였다.” 강자 편에 선 판결을 공정하다고 믿었고, 은퇴 후 객관적인 거리에서 보니 충분히 약자의 편에 서지 못했다는 말이다. 약자는 사법적 구제 절차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공정한 판결을 받는 것은 더 어렵다. 미국 연방판사는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종신직이다. 하물며 미국도 그리한데, 철저하게 강자 편인 보수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은 어떠했을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되었던 지난 9년을 되돌아보자. 사법부와 법 집행 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마저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받는 기간이다.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이 장차법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것은 그래서 이상할 것이 없다.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법 규정이 충분치 못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생긴다. 그 결과 피해자는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 글은 장차법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이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편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차법 주된 목적은 ‘권리구제’에 있다

장차법은 다양한 일상생활의 차별 유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등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를 담고 있다. 법 취지와 목적이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있다는 의미다. 엄밀히 말하면 권리구제가 핵심이다. 장차법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시정권고 기능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정권고 이행은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한계를 보이던 터였다.

2001년 장애를 이유로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에 탈락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제1호 장애차별 진정사건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임을 인정했지만 권한의 한계 탓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하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법원은 제천시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임용과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며 제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 제정 당시 장애인 사회가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기능을 주목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률명에도 ‘권리구제’를 포함시켰다. 그래서 장차법의 장애인 차별 개선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법원의 강제력이 수반된 차별 피해자 구제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관은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사건 모두를 다룬다. 장차법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로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추행 및 강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도 포함하고 있다. 차별유형에 사실상 폭행, 감금, 강간, 사기, 준사기, 횡령 등 일반 형사범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 칭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인권위 사건처리 관행 개선 필요

장애인 사회는 장차법 제정 당시 인권위 차별시정 기능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처리 관행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다수의 진정사건이 각하 및 기각처리 되고 차별시정권고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차별 받은 장애인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사실에 관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차별이 있었을 경우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장차법 제41조(준용규정)에 따라 차별 진정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장차법 시행이 인권위 차별사건처리 관행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여지가 애초에 없었다는 의미다. 장애차별 시정권고율이 장차법 시행 전에는 3.93%, 이후는 3.81%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항 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는 각하 처리하고, 그 중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하처리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인권위가 의지가 없으면 단지 진정시점이 사건 발생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여지가 있다. 이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진정제기 시점 및 인권위 결정과 무관하게 각하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1항에서 위원회의 구제조치 이행, 정책개선 등의 권고를 임의규정으로 마련해 놓았다. 진정 조사 결

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애인에게 구제조치 이행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개선 권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가 법조계 출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장애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당사자 입장에서 사건이 다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 건이 13배 수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도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반면, 2009년을 기점으로 인권위 조직과 인원은 20% 이상 축소되었다. 증가하는 차별 및 인권침해 진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사관 확충이 요구된다. 이상의 조치를 통해 시정권고율을 제고하고, 장차법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법무부 차별개선 의지를 보여야

인권위로부터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는 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차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차법 시행 이후, 단 두 차례 시행되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시행된 사례가 없다. 차별시정명령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제43조 1항의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 시정 권고를 가해자가 불수용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의 전제조건으로 피해자 신청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중복적인 피해자 의사 확인에 불과하다. 한편, ‘정당한 사유’ 내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판단 재량권이 법무부에 있다는 점에서, 또한 피해자의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차별해소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 필요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경우 손해배상, 차별행위 중지, 차별관행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또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차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 이전에도 장애인 차별행위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며, 위법성 판단 근거와 논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와 배려의무 등 해석상의 법 이론이 었다. 하지만 법률 일반 조항이나 법 이론에 근거한 판단은 담당 판사의 차별 감수성이나 신념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장차법은 차별유형과 제재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법성 판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 외에도 여러 특징적 요소가 있다.

첫째, 장차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차별로 보지 않고(제4조 1항 1호), 이 정당한 사유 또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나 사업 수행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4조 3항 1,2호). 더 나아가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둘째, 장차법은 금지하는 차별행위 유형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미이행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두고 있다. 셋째,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구제에 있어, 미국 장애인법(ADA)에 규정되어 있는 법원의 강제명령(injunction)제도를 도입한 적극적 조치 조항(제48조 제2항)을 두고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장차법 이후 판례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장차법 실효성 저해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형사소송 제기나 판결과정에서 장차법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가 장차법 제49조(차별행위) 위반으로 형사 기소된 사건은 5건, 관련 판결은 11건, 피고인은 28명이었다. 그 중 장차법 단독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없었다.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죄판단과 양형에 장차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장차법 제49조(차별행위)가 법원 판결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차별의 ‘악의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경합하고 있는 다른 범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계가 우려하고 있는 대로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차별 개선 유인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13건의 판결에서 19명이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70%에 가까운 13명이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일부 승소의 경우, 인용되지 못한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고인과 분담하게 되어있다. 소송비용이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을 넘어서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셋째,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 인용률이 낮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률은 48.1%인데 반해, 적극적 조치는 21.4%에 그치고 있다.

우선, 법원 판결에서 차별행위 중지 및 시정을 강제하는 적극적 조치 인용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피해자 입장에서 판결 전에 임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적극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혜택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미친다는 면에서 차별개선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표소송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판례분석 결과 재판부는 48조 2항을 임의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판부 스스로

차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재량권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인용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 입장에서 적극적 조치 청구취지를 쓰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 구체 수단에 대한 법원 인식수준은 높지 않다. 법원은 내부세미나를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고, 복지부는 적극적 조치 판결의 의미를 홍보하고 법무부, 공익변호사 그룹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원이 인정한 유용한 판단기준, 즉,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장차법에 명문화(제4조 3항 보완) 함으로써 타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선고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차법이 형사판결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제49조만으로 형사기소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차별의 악의성 충족 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의 고소·고발과 검사의 기소 단계,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 내용 및 규모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악의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차별 피해자 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차법 제8조는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완해 정당한 편의제공 조치 외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소송지원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별 소비자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한 것에 이어, 19대 국회부터 소송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다섯째, 집단구제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장애인 차별행위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장차법은 제47조에서 차별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배분하고 있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증권 분야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입증책임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우선 장애인단체소송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이나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아닌 사업자의 특정행위 금지와 같은 보편적이고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이기에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어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장애인들의 당사자성이 강해 소비자 분야보다는 단체소송이 활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형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책임인정(차별행위 금지 또는 중지) 선까지는 장애인단체에게도 원고적격을 부여하되,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개별 피해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소송규모로 인한 집단

소송(opt-out)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징벌적손해배상의 효과가 있다는 점. 장애인인권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가 소송을 주도하면 피해자 소송참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의 장애인 인권 보호, 존중, 실현 의무

장차법은 장애인 인권 보호, 존중, 실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다. 사법적·비사법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가해자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법률이 있어도 정부가 이를 집행할 의지가 없고 사법정의를 서지 않으면 국가도 인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국가 구성원들의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장차법 실효성 제고 고민의 종착점은 결국 국가일 수밖에 없다.

▶ 용어해설

옵트-인(opt-in)방식의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재판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은 약하겠지만, 소송에 참가한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치게 되어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소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참가 하지 못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옵트-아웃(opt-out)방식의 집단소송은 판결효력의 범위를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 모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권리구제에 용이하고 불법행위의 반복억제와 예방효과가 있다. 다만 소비자 분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증권분야 집단소송도 이 방식이다.

법률 및 자치법규에서 장애인지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제30조). 관광서비스와 관련 장소에 대한 접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장차법도 제24조에서 문화·예술 활동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광 편의제공 내용은 없어 이를 보완하지는 주장이 있다. 삶의 전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권리를 특정한 국제규범이나 법률, 자치법규 등을 제정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누구나’ 또는 ‘모든 사람’ 범주에서 장애인을 유령 취급하거나 장애 특성에 따른 특정한 필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국제인권규범이나 국내 일반 법률, 자치법규가 장애인지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굳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포함해 국내 장애인 관련법은 19개다. 전 세계적으로 드물 정도로 많은 경우라고 한다. 또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는 2,411개에 이른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법·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일반 법률과 자치법규가 그만큼 장애인지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약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관행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8월에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 서울시의 회가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7개월만이다. 주요 관광시설에 장애인·노약자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들이 불편 없이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5년간 152억 원을 투입해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춘 관광지·시설·지역에 '무장애 인증' 부여,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 장애인·노약자 접근성 정보를 담은 '서울시 관광 가이드북' 제작·배포, 장애인 관광 차량·휠체어·유모차 대여 등을 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렌

터가 사업자가 장애인용 차량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위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 근거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은 2014년 5월에 신설되었다. 1976년 전신인 「관광사업법」이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되어서야 장애인지적 관점이 법률에 반영된 것이다. 앞서 2016년 1월에 서울시는 동법률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관광 취약계층 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관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나 회의록을 보면 그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를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장애인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를 특정한 법률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 의회가 ‘모든 사람’의 삶과 관련된 일반 법률 및 자치법규 제정과정에서도 장애인지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를 기대해본다. 특정한 권리를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법 제도가 실제로 그렇게 기능할 수 없다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지적 관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서울특별시의회 27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

의원 발언 중(2016. 12. 9)

- | | |
|---------------|--|
| 김구현 의원 | 관광취약계층 관련돼서 상위법에 근거들이 있고 관광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예시된 것으로는 장애인 등이죠? |
| 관광체육국장 |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있고 관광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
| 김구현 의원 | 그러니까 관광취약계층이라면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 최소한의 관광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서 경제적 기준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신체적 조건에서 장애인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 |

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 의원 관광취약계층, 이 정도 기준이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관광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관광체육국장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되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

이혜경 의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장애인,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한다, 아주 좋지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장애인 수가 250만 명, 서울만 약40만 명, 기초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 40만 해서 80만 명이거든요. 일단 이 80만 명의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관광의 기회를 주고 권리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의 문제에 있어서 미처리 사유서에 있잖아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일정 등이 예측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계가 나오진 않았고, 2016년도 예산에 1억800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는데 일단 이것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제정안이라고 하면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가 쓰일 수 있고 얼마만큼 이분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많은 요구를 해야 될지 사실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일단 한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없으면 당장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이 관광을 못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체육국장 네.

중증 자폐인과 가족에게 국가는 존재하는가?

정리 **함술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인터뷰 중 <이용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한 분을 만났다. 청년 자폐인 아들을 둔 유영복씨는 답답함이 많아 보였다. 그의 아들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데, 2년 전 센터 측이 부당한 <이용 계약서> 서명을 요구해서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제행동'을 3번 이상 보이면 강제 퇴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폐인의 장애 특성을 이유로 강제 퇴소 조치한다는 게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법률,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행정기관과 인권감시기구들이 층층이 있지만 한 자폐인의 절박한 문제를 어느 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절망감이 들 정도다. 이 사례는 법, 제도, 시스템이 구비되더라도 장애인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의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자. 우선, 성장과정이 궁금했다.

우리 아들은 1987년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출생 초기에는 우량아였고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했어요. 하지만 커가면서 신체발달은 정상적이었는데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말이 늦되는 아들이구나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부모와 눈 맞춤이 안 되어 걱정을 하던 중에 병원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현재 30살이 되고 신변처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고요. IQ가 60정도 된다고 10년 전에 진단받은 적 있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겼고 날씬한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이른바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도전행동은 거의 없어요. 타인이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요구를 하거나 환경에 놓이면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도전행동'은 아니에요.

사회로 나가니 오히려 “퇴행이 되더군요.”

이어서 그는 자폐성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로 나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해 주었다.

우리 아들이 초중고 과정을 특수학교에서 보내고 전공과(2년)를 졸업한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학교 다닐 때와 지역사회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때 아들의 얼굴표정이 달랐어요. 학교에 다닐 때는 표정이 온화하고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졸업 후 그룹홈과

보호 작업장에 다닌 지 1년 쯤 지나면서 체중이 10Kg 이상 줄고 이른바 퇴행이 되더군요. 그 이유가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양성과정의 차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인간의 심리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사회복지사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순한 복지전달자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전공과를 다닐 당시 제 아내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과과정이 엉터리임을 세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룹홈을 6개월 만에 그만두었고, 보호 작업장은 1년 뒤에 기관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개원초기 입소하여 10년 동안 다닌 그 센터에서 지난 8월 14일 정식 퇴소했어요. 애증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다니던 센터를 나오면서 왜 애증이 교차한다고 말했을까?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보호 작업장을 나오면서 갈 곳 없는 아들을 받아 준 곳이 그 센터였어요.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입소초기에 잘 적응하고 1년 만에 체중도 늘었어요. 이렇게 입소초기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장이 특수교육을 배우고 특수교사 일을 하다가 사회복지로 진로를 바꾼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시설장이 교체되면서 아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어떤 철학과 경험을 가진 시설장이냐에 따라 이용자들의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10년 동안 센터에 다니면서 시설장을 4명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주간보호 기능만 한다고 봐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역량에 따라 이용자들은 복불복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봅니다.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복지종사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주간보호시설조차 이용할 수 있었던 게 어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웬만큼 기다리지 않고서는 센터 입소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정말로 갈 곳이 없었어요. 당시 지자체에서 설립한 센터에 운 좋게 입소할 수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서비스의 질을 논할 때가 아니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 관리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시설 설립의 목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주간보호시설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단순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그나마 수요에 비해 시설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게 부모들의 불만이다.

장애인 강제 퇴소를 정당화하는 <이용 계약서>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그러저럭 지나다가 2015년 6월에 유영복 씨와 센터 사이에 큰 갈등이 빚어졌다. 센터 측에서 시설 <이용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며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게 발단이었다.

이용자가 도전행동을 3회 발생하면 퇴소시킬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어서 계약서 서명을 거부했어요. 세터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대한 명분이나 타당성은 설명하지 않고 다른 부모는 다 서명했는데 당신은 왜 안하냐는 식이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슬펐어요. 만약 내가 부당한 서명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관례로 굳어 질까봐, 저라도 나서서 저항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해당 센터 <이용 계약서> 제8항은 “이용인의 정서, 문제행동(공격행위, 성폭력, 과잉행동, 상동행동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3회 발생 시 보호자 상담, 5회 발생시 1주 가정보호, 이후 3회 발생 시 서비스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었다.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센터의 복지종사자에게 이용자를 골라 받으라는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복 씨 사건 이후 우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420곳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 계약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3진 아웃' 규정 말고도 전국 각지의 센터 <이용 계약서>에 많은 문제가 있다. 센터를 '갑'으로 이용자를 '을'이라 표현하고, 부모가 '자모회'나 '부모교육'에 자주 불참하면 자녀를 퇴소 조치한다는 규정도 있고, 45세 정도로 이용자의 연령을 제한하기도 한다. <표준 계약서> 없이 지역마다 센터마다 이용 계약서가 중구난방이다. 중증 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에서 강제 퇴소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시설 퇴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강제 퇴소 당한 장애인과 그 가족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결국 빨리 죽으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탈시설화 정책으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보내고 있지않습니까? 지금 거주시설에 들어간다는 건 자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다 버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관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제로 퇴소를 시킨다는 건, 부모가 있을 때는 모든 돌봄 책임을 부모가 지도록 하고 부모가 죽으면 함께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퇴소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사회위원회처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복지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과잉행동'이 심한 이용자 때문에 센터 운영이 곤란하다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입하고 중재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 퇴소를 전제로 한 절차는 우리의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퇴소 시스템이 아니라 포괄적 지원시스템을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유영복 씨는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부모단체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저의 진정성이 부족하였나 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아마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의 경우는 인권위 결과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마치 항명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는 내용의 본질보다는 이해관계자들 끼리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정서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가와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복지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보다는 복지사가 더 잘 알 겁니다. 통제할 기제가 애초에 없는 겁니다.

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이라 방관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주간보호시설에서 할 일이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1년 6개월이나 뭉그적거리다가 결국 차별 시정 권고를 하는 대신 애매한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영복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처사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설마 설마 했어요. 진정인지 1년 6개월이나 끌다가 기각 처리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신들은 ‘정책권고’를 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던데, 인권위 진정사건의 처리결과 목록에 ‘정책권고’란 용어는 없어요. 그냥 ‘기각’인 거죠. 인권위 설립 이래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은 통계적으로 90% 이상 각하이거나 기각입니다. 진정 당사자에게 미안하니 ‘정책권고’란 출처불명의 립서비스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기각’이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증거라고 봐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인권을 인권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법률요건으로 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권을 법률 위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경직된 법률가의 시각으로 진정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죠.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나아질까 하는 기대를 하였지만, 착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주간보호센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사항은 무엇일까?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큰 틀에서 본다면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하는 내용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각종 기관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를 분배하게 하는 역할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간보호센터는 단순보호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개념의 틀로서 바뀌 운영하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보호작업장으로라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전달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자식 '덕분에' 당당하게 산다.

사람들은 장애인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는 고통과 절망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장애가 있든 없든 부모에게 자식은 모두가 아픈 손가락이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도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느 부모처럼 희로애락을 겪는다. 장애인 자식을 키우면서 특별히 겪는 어려움도 있었고 특별한 즐거움도 있었을 터이다. 그의 경우는 어땠을까?



기어 다니는 어린애가 혼자 걷는 순간이 발달장애 자녀에게도 일어나요. 다만, 그 시기 늦을 뿐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은 언어 표현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단답형의 대답이 복문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녁에 뭘 먹고 싶은가 하고 물으면 예전에는 '삼계탕', '소머리국밥' 같이 짧게 답했는데,

요즘은 '나가서 순대국밥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지금 30살인데 40살 쯤 되면 이보다 훨씬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 저는 70세가 되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늘 행복해요. 어린 시절에는 매일매일 속상했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 아들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식의 발달장애를 이해하고 온 마음으로 수용하면 행복이 다가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지죠.

1958년생인 유영복 씨도 이제 노후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부모로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보통의 부모와 비교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노후 준비가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한다.

별반 다를 것 없어요. 자식한테 돈을 많이 남겨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행복해 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도 여느 사람들처럼 건강을 잘 유지해서 아프지 않고 살면서 힘닿는 데까지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노후 준비인 거죠. 그리고 자

식들한테 물려줄 유산은 없어요. 지금도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다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 국민연금에서 사후에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제 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둔 정도...

인터뷰 말미에 유영복 씨는 “발달장애를 장애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개성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나는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 ‘덕분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며 간단하고도 깊은 말을 남겼다. 평범한 엔지니어였던 그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장애인 인권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토론회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이번 경우처럼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거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다. 이게 장애가 있는 자식 ‘덕분’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자식 때문에 매사에 위축되어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에 일침을 주는 말이다.

그와 인터뷰하는 내내 착잡한 심정이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성인 최종증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곳이다. ‘문제행동’을 한다 해서, 부모의 참여가 부족하다 해서, 또는 나이가 많다 해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쫓아낸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중앙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에 기반한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시설 측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 또 지방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부당한 이용계약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나라다운 나라’가 필요하다.

제도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인권

<이용자 계약서>로 ‘갑질’ 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글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2000년 이후 장애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중앙 정부는 장애 관련 법률을 20건이나 제정하였고 자치단체들도 무수한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등 선진국형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권익옹호기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감시기구들이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장애인단체들도 장애인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수준과 인권옹호시스템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제도와 시스템들이 구체적인 개별 사례와 조우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까? 최근 필자가 취재한 한 사건을 둘러싸고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용자 내쫓는 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한 도시에 거주하는 자폐성 장애 남성 A씨는 거주지 인근 주간보호센터를 12년째 이용하고 있다. 2015년 1월에 당시 29살이던 A씨가 센터에서 손을 입에 대고 심하게 소리를 내자, A씨보다 3살 어린 재활교사 B씨가 “손 내려, 차렷” 하고 제지했다. 그럼에도 A씨가 계속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자 B씨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을 뒤로 꺾어 부러뜨렸다. A씨는 오른쪽 팔을 절개하고 철심 7개를 박는 큰 수술을 하고 퇴원하였다.

사건 이후, A씨 부모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재활교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A씨가 스스로 벽에 부딪쳐 팔을 골절했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이 팔을 부러뜨렸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A씨 부모는 치료비를 보상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였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A씨 아버지는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아들 또래 재활교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었다.”고 했다.

대신, A씨 아버지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며 의뢰했다. 인권센터가 두 차례 현장방문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주간보호센터에서 A씨 학대뿐 아니라 다수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자치단체와 주간보호센터 측은 인권센터 조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재발방지나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용자들의 과잉행동만 부각시키고 심지어 조사를 의뢰한 A씨 부모를 힐난하기까지 했다.

한계를 실감한 A씨 부모는 결국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역과 서울의 장애인단체들에게 사정을 호소하여 장애 및 시민단체 8곳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공대위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고 시의회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를 하는 등 직접행동에 나섰다.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고 여론이 비등하자 마침내 시장이 면담에 응했고, 공대위와 시청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합의했다. 첫째, 이용자가 25명 이상인 주간보호센터에 종사자 1명씩 증원한다. 둘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모든 주간보호센터에 CCTV를 설치한다. 넷째, 모든 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가해 종사자와 해당 센터의 장을 인사 조치한다.



시청 앞에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사건에 대해 시장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출처: PBS 뉴스>

시청 앞에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사건에 대해 시장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출처: PBS 뉴스>

피해자 부모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 노고와 시간을 써가며 노력한 끝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청이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렇게 학대 사건이 일단락되는데는 싶었는데, 해당 주간보호센터가 반격을 가해 왔다. 2015년 6월, 센터 측에서 <이용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며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문제는, 새 계약서에 부모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용인의 정서, 문제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3회 발생 시 보호자 상담, 5회 발생 시 1주 가정보호, 이후 3회 발생 시 서비스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A씨 부모는 주간보호센터 측이 보여주는 너무나 뻔뻔한 보복 조치에 화가 났고, 또 자신의 아이뿐 아니라 많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조항이어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센터 측의 끈질긴 서명 요구에도 A씨 부모는 일방적인 계약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센터 측은 2016년 2월 내용증명을 보내 “7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급해진 A씨 부모는 시청에 <이용 계약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도 냈다. 그러자 시청에서 이런 회신이 왔다. “답답하신 부모님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나, 이는 시설운영에 관한 건으로 시설과 이용 장애인 부모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

로 판단됩니다.” 이는 시민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 운영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가 그 사안은 사인간의 문제이니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직후 일단 A씨가 주간보호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구체조치를 취해 주었다. 하지만 이른바 ‘삼진 아웃’이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1년 6개월이나 미루다가 최근에 ‘기각’을 통보해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마당에, A씨 부모는 또 다시 직접 구제방법을 찾아 나섰다.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모조직, 장애인단체 등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불공정한 <이용 계약서>를 저지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것은 내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수많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문제라며 규탄 성명서라도 발표해 달라며 매달렸다. 그런데 폭행 사건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관이나 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폭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이용 계약서>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A씨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자. “인권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곳은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관료주의도 심해 적극성이 부족하다.” “부모조직들은 자신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여 한 청년 자폐인이 보호시설에서 폭행을 당해 시작된 불행이 2년 6개월이나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 A씨는 학대를 당했던 그 시설을 불안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 부모는 여전히 서류 몽치를 들고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제도와 시스템의 사각지대

이 사연은 한 장애 청년과 그 부모가 겪고 있는 사례지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2000년 이후 장애인 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 사례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잘 보여준다. A씨와 그 부모의 투쟁은 장애인,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삶의 현실에 대해 공무원, 시설 종사자, 각종 센터 종사자, 장애운동가와 인권운동가, 부모 모두가 답해야할 질문들을 던진다.

첫째, 지역 차원에서 민간 장애인인권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인권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A씨 폭행 사건에 조사권을 발동하고 개입했

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주간보호센터와 자치단체를 강제하지는 못했다. 두 곳 모두 인권센터의 보고서를 간단하게 무시해버렸다. 자치단체 재정으로 운영되고 감독을 받는 인권센터가 자치단체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다른 기관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통해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용 계약서> 문제 같은 행정적 사안에서는 인권센터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그래도 조사는 했지만, 권익옹호 기능도 겸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 사례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역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속속 설립되고 있지만, 그 기능, 위상, 인력,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이 기관 역시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인권 감시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까닭이다.

둘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둘러싸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협업과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용 계약서>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이어서 <표준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이용 계약서>가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례의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나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협업은 고사하고 각자의 권한에 속한 사무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의 관료주의, 책임 떠넘기기, 칸막이 행정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모든 기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자치단체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문제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들이 경직되고 구획되어 있으면 한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한다. 장애인의 삶에서 복지 서비스와 인권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를 지탱해 주고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이다. 모두가 주장하듯이 복지 서비스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이용 계약서> 문제가 법리상 장애인 차별로 보기 어렵더라도 일반 상식에 비추어 부당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는 이상,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해당 자치단체 등과 정책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사회가 부러워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있고 층층이 인권 감시기구들이 확충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언제까지 개인이 서류 몽치를 들고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녀야 한단 말인가.

셋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삼진 아웃’, 즉 퇴소 조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분리와 차별을 겪고 있지만, 특히 자폐

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약 80%가 발달장애인이고, 이들은 교육, 고용, 사회활동, 문화, 자기주도성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보면, 베어베터처럼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최상의 수준이다. 보호작업장에서 월 10~20만 원을 받고 살면 그나마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장애인복지관의 개별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참가하는 사람도 다행스러운 수준이다. 그 밑이 주간보호센터에 다녀야 하는 사람이고, 최악은 그곳에서도 거부를 당해 아무 곳도 갈 수 없고 집에서만 지내거나 가족과 이별하여 거주시설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A씨 같은 중증 자폐인이 주간보호센터에서 퇴소 조치된다는 것은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정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른바 ‘문제행동’ 때문에 퇴소 당했다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센터가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간보호센터들마다 이용을 원하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빗하러 ‘골칫덩어리’를 받아들일겠는가. 그런 장애인과 가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그렇다면 일반 상식 수준에서 또 정책 및 입법상 목적에서 볼 때 ‘삼진 아웃’은 정당한 조치인가? 일반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욕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정도와 가족의 경제력 수준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해당 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자치단체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이 같은 원칙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음악 연주를 듣고 있는 발달장애인 이용자들

그런데 문제의 주간보호센터는 “정서, 문제행동(공격행위, 성폭력, 과잉행동, 상동행동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퇴소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용 계약서>를 보호자에게 강요한다. 당연히, 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중증 장애인이 자치법규에 의해서 입소 시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 동시에 강제 퇴소의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위 ‘문제행동’이 지속된다고 해서 퇴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도입한 정책 및 입법의 취지와 모순된다.

〈이용 계약서〉로 ‘갑질’ 하는 주간보호센터

사안이 증대하고 다급하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긴급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17곳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 관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 계약서〉를 요청하였다. 지금까지 420여 곳 센터의 〈이용 계약서〉가 답지하여 현재 정밀하게 분석중이다. 최종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 계약서〉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 방금 소개한 사례처럼 ‘문제행동’을 이유로 퇴소 조치를 명문화한 〈이용 계약서〉가 상당수 존재한다.

심지어 센터를 ‘갑’으로, 이용자를 ‘을’로 규정한 이용계약서도 다수 있다. 주간보호센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돈 내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를 ‘을’이라 하고, 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제공자를 ‘갑’이라 한다. 이런 문구만 보더라도 복지시설들이 평소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문자 그대로 ‘갑질’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또는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주간보호센터들도 상당수 있다. 일례로, 부모가 ‘자모회’나 ‘부모교육’에 성실히 참석하지 않으면, 그 자녀인 이용자를 강제 퇴소시킬 수 있다는 기괴한 규정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세상 천지에 이런 규정이 담긴 계약서를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용 계약서〉 또는 서약서 형태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주로 센터 홍보용으로 이용자의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목적에서다. 그 목적에 악의성이 없다하더라도 이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한정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은 부당하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도 대다수 〈이용 계약서〉에 들어있다. 대개는 만45세 이하를 한계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만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이런 제한을 두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법률, 중앙 및 지방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행정기관과 인권감시기구들이 층층이 있지만 한 층층 장애인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례는 법, 제도, 시스템이 구비되면 저절로 장애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 구멍이 송송 뚫린 우산마냥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주간보호센터 퇴소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주간보호센터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주간보호센터들이 무분별하고 자의적으로 이용자를 퇴소 조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폐성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테면 누군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물거나, 꼬집거나, 할퀴거나, 자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무조건 '문제행동'으로 보고 퇴소의 사유로 삼는 것은 자폐인의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위 '문제행동'은 자폐성 장애인의 고유한 장애 특성으로 봐야한다. 정부가 <표준 계약서>를 만들 경우 이 같은 장애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또 이용자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종사자를 배치시킬 것이 아니라 중증인 이용자가 많으면 종사자 내지 보조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꼭 퇴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외부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는 등 세심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도 퇴소한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을 강제 퇴소시킨다는 것은 국가가 가장 많은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건 나라가 아니다.

새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로 집권했다. 장애인 서비스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인권옹호시스템부터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기 바란다.

정신장애인은 복지시설에 들어오지 말라고?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조례들

글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신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차별"은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저해하는 모든 분류, 배제, 혹은 선호를 의미한다. ... 모든 정신장애인들은 가능한 한 지역 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다.”(유엔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으로 향상을 위한 원칙)

위 국내의 법규범에서 보듯,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그 어떤 인구 집단보다 심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

신장애인은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장애인의 소행이라고 사후적으로 단정 짓기 일쑤다. 이렇게 모든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미신이 날로 고질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가 없다. 정신장애인들 모두를 시설에 가두어버리고 싶은 게 이 주류사회가 감추고 있는 욕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UN은 악명 높은 한국의 정신장애인 격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고, 정신장애 당사자들도 이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다. 다행히, 올해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당수 정신장애인들이 격리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복귀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www.amis.go.kr)을 보면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227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동에서 퇴원하였다.

이렇게 퇴원한 정신장애인들과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던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향유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며 휴일에는 가족과 나들이를 가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은 때론 은밀하게 때론 노골적으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복지시설들조차도 관련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실은 어처구니가 없다.

장애인 배제하는 복지시설들

각 기초단체별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례에 의해 설립된 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의 설치 근거와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차별조항을 명시한 복지시설 종류, 법적근거, 정의

| 종류 | 설치 근거 | 기 능 |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 |
|---------------------|---------------------------|--|
| <p>청소년 수련시설</p> | <p>청소년 활동 진흥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 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과 체류에 적합한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을 하는 시설 |
| <p>문화의집</p> | <p>문화예술 진흥법</p> | <p>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이해, 체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p> |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청소년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또래와 우애를 쌓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든직한 성인이 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신장애인이 노인이라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교양 교육과 취미생활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복지관”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사회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의집”을 통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정신장애인들이 이런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지역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사용, 입장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사례만 살펴보면 하자.

아래에서 보듯이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는 ‘정신질환자’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구시 중구 이외에도 부산시 강서구·동구·중구, 대구시 동구·서구·북구,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아산시·천안시, 경북 경산시 사회복지관 조례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심지어 퇴관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제3조의2(시설의 이용) ③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회원증 발급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같은 규정이 포함된 노인복지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부산시 동구, 대구시 서구·달서구, 강원 태백시·홍천군, 충북 옥천군·음성군·제천시·진천군, 충남 아산시·예산군·천안시, 경북 예천군·청도군·칠곡군도 포함된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를 보자.

제5조(수련시설의 사용 등) ②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인천시 서구뿐 아니라 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서구·수성구, 광주시 서구,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무주군·부안군·익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경산시·경주시·봉화군·상주시·안동시·영천시·예천군·울진군·포항시, 경남 고성군·의령군·진주시·합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조례에도 이런 규정에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집’ 조례를 보자.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는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7조(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읍면동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양산시 말고도 강원 양양군·태백시, 충남 아산시, 전북 무주군·임실군, 전남 여수시, 경북 영주시, 경남 김해시·산청군·양산시·창원시 문화의집 조례에도 동일한 규정이 들어 있다.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조례에서는 이런 차별 조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입장은?

자주 인용되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다양한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지역 내 마을 공동체, 다양한 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하나인 복지시설 “이용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는 보편타당한 권리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신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 문화와 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들이 복지시설을 더 필요로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단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이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자치법규로 특정한 주민의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조항들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신장애인들을 차별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왜 이러는 걸까?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해당 복지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측에 질문했다. 정신장애인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조항이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런 조항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하지만 “관리자가 외부일정으로 바빠 의견을 줄 수 없다.”,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라.”는 등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그래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봤다. 어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A씨는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용이 어려운 서비스도 있다고 응답했다. 가령, “이용자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 일 경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만일 정신질환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행동을 한다면 타인

의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제한 규정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조례에 배제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옳지 않고 타인의 이용에 피해를 주는 경우 운영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거친 뒤 이용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B씨는 “그런 문제점을 깊이 고민을 해본적은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누구라도 공공질서를 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이는 정신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라도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가 지속되었을 때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 이용제한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C씨는 의견을 구하자 “개인적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법규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기관 운영상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만일 발생할지 모르는 아주 적은, 만 분의 1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원인이 정신질환자의 돌발행동이라면 이에 맞는 조례의 보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의집 관계자 D씨는 “문화의집이 전국 100여개이고 소속 지자체와 각 부서가 달라 조례 내용의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의집 관련 조례는 제정연도가 오래되었는데, 예전 조례가 그대로 남아있어 관련 지자체의 자정이 필요하다”도 했다.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호되는 나라이길

이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근본 요인은 정신장애인을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신장애인을 비이성적이고 미성숙한 인격체,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조차 이들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영역에서조차 배척되는 현실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이 같은 법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도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보호받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2017년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분석

글 김민정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예산정책 연구원

1. 장애인 예산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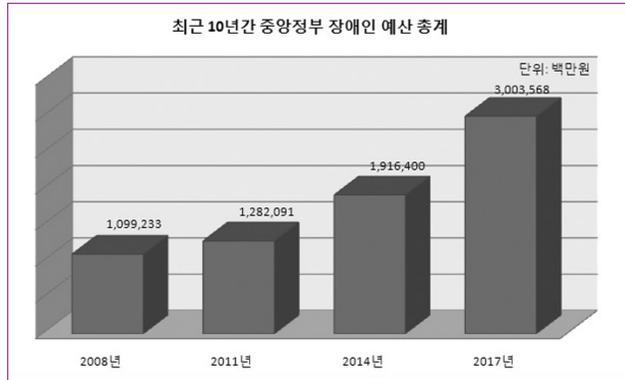
정부예산은 공공분야에서의 국가적 우선순위를 가장 실질적으로 표현하며 정당의 정강이나 법률보다 구체적이다. 이러한 예산운영은 재정자원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전환시키는 과정이며,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형성하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실제 예산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동체적 합의나 장기적 비전보다는 이익집단 간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관료주의적 행태가 강하게 작용한다.

최근 공공부문은 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예산증가는 답보상태이며, 이는 장애인인 국민의 최저생활기준(national minimum)을 악화시키고 일반국민생활기준과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중앙정부의 장애인예산은 정부총지출 대비 0.5%의 미미한 수준이었고 2017년의 경우에도 0.75%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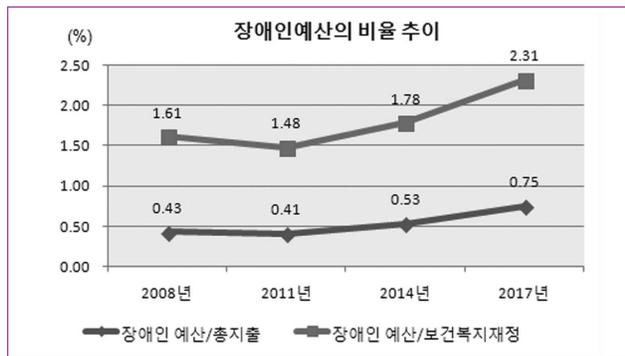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시민은 좌절과 배제, 빈곤과 무기력의 함정에 빠지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영구적 낙인을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대해,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의 관점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2. 2017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의 규모와 행정부처별 비율

2017년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총3조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보 면 이는 지난 2008년도의 1 조992억 원에 비하여 3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전체 중앙정부 예산 및 복지재정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장애인예산의 비율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7년 장애인예산은 중앙정부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0.75%이고, 보건복지재정과 비교해도 2.31%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 추정치인 1690조의 0.17% 규모이다.



〈 그림1 〉



〈 그림2 〉

〈 표1 〉 2008~2017년 장애인예산의 규모와 비율

(단위: 조 원, %)

| | 2008년 | 2011년 | 2014년 | 2017년 |
|--------------|-------|-------|-------|-------|
| 중앙정부 총지출 | 257.2 | 309.1 | 355.8 | 400.5 |
| 중앙정부 보건복지재정 | 68.2 | 86.5 | 106.7 | 130 |
|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 1.09 | 1.28 | 1.91 | 3.00 |
| 장애인예산/총지출 | 0.43 | 0.41 | 0.53 | 0.75 |
| 장애인예산/보건복지재정 | 1.61 | 1.48 | 1.78 | 2.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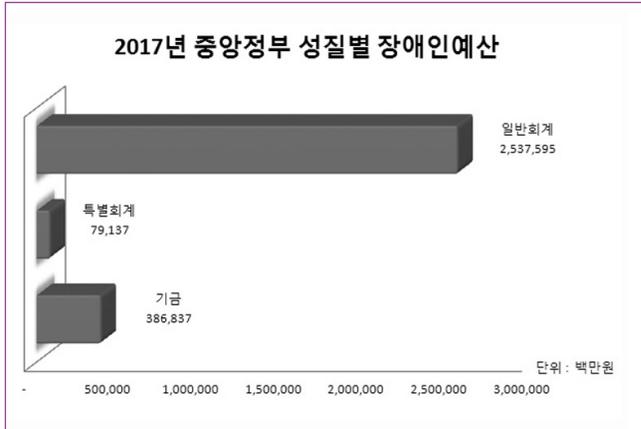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2017년 중앙정부예산 모니터링 결과, 협의의 장애인예산(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과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기관 55개의 예산 중 18개 부처에서 장애인 예산이 발견되었다. 특히, 2017년 중앙정부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7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12.5%, 고용노동부 9.3%

로 이 세 부처의 비중이 93.5%에 달하여, 장애인예산의 부처별 편중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로 장애인고용공단과 기타 장애인관련 고용 및 직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저상버스 지원예산과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이는 기존의 예산과정에 별다른 혁신이나 변화가 없이 점증적으로 유지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다양화와 끊임없는 서비스(seamless service)를 위하여 부서를 초월한 예산과정의 도입과 활용이 요청된다. 지난 10년간(3년 단위) 장애인예산의 부처별 규모와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 표 2 〉 2008~2017년 장애인예산의 규모와 비율

(단위: 백만원, %)

| 부처 | 2008년 | | 2011년 | | 2014년 | | 2017년 | |
|------------|---------|------|-----------|------|-----------|------|-----------|------|
|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 경찰청 | 200 | 0.0 | 3,000 | 0.2 | - | - | 1,190 | 0.0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1,800 | 0.1 | - | |
| 문화체육관광부 | 29,531 | 2.7 | 44,002 | 3.4 | 84,027 | 4.4 | 15,346 | 0.5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15,158 | 0.8 | 7,166 | 0.2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 | | - | | 1 | 0.0 |
| 방송통신위원회 | 5,416 | 0.5 | 6,223 | 0.5 | 9,444 | 0.5 | 2 | 0.0 |
| 법무부 | - | | - | | - | | 1,311 | 0.0 |
| 외교부 | - | | - | | - | | 230 | 0.0 |
| 문화재청 | 105 | 0.0 | 265 | 0.0 | 72 | 0.0 | - | 0.0 |
| 인사혁신처 | | | - | | | | 569 | 0.0 |
| 중소기업청 | 1,800 | 0.2 | 1,620 | 0.1 | 6,200 | 0.3 | 8,876 | 0.3 |
| 산림청 | 400 | 0.0 | 400 | 0.0 | - | | - | 0.0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 | - | | 1,066 | 0.0 |
| 헌법재판소 | - | | - | | - | | 15 | 0.0 |
| 행정안전부 | 14,881 | 1.4 | 10,130 | 0.8 | - | | - | 0.0 |
| 여성가족부 | 427 | 0.0 | 1,263 | 0.1 | 1,289 | 0.1 | 3,604 | 0.1 |
| 보건복지부 | 702,708 | 63.9 | 860,051 | 67.1 | 1,366,389 | 71.3 | 2,153,363 | 71.7 |
| 고용노동부 | 189,776 | 17.3 | 186,586 | 14.6 | 260,539 | 13.6 | 279,799 | 9.3 |
| 교육과학기술부 | 42,527 | 3.9 | 44,872 | 3.5 | 54,382 | 2.8 | 57,116 | 1.9 |
| 국가인권위원회 | 350 | 0.0 | 593 | 0.0 | 395 | 0.0 | 495 | 0.0 |
| 국토교통부 | 86,712 | 7.9 | 95,286 | 7.4 | 105,365 | 5.5 | 376,196 | 12.5 |
| 기획재정부 | 24,400 | 2.2 | 27,800 | 2.2 | 11,340 | 0.6 | 97,223 | 3.2 |
| 합계 | 990,129 | 89.9 | 1,161,016 | 100 | 1,799,695 | 100 | 3,003,568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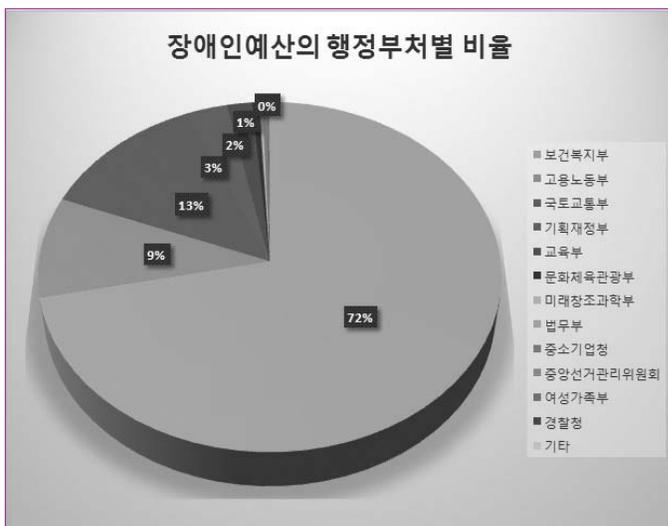
〈 그림3 〉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일반회계예산이 84%, 기금이 13%, 특별회계가 3%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고용보험기금, 복권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6개 기금에서 장애인예산이 편성되었다.

가장 비중이 낮은 것은 특별회계로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등을 위한 교통시설 특별회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장애인가정 방과 후 학습지원을 위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단 2건이 운용되었다.

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 현황

2017년 장애인예산의 71.7%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장애아 지원의 5가지 사업이 총 1조9352억으로 (89.9%) 주를 이룬다.



〈 그림3 〉

현금급여로는 장애인연금 5549억, 장애인수당 1282억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164억,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복지시설·거주시설 등의 장애인시설운영지원에 5608억이 편성되었다. 이 밖에 장애아지원 1749억, 보건의료재활에 1156억,

일자리·직업재활지원에 870억이 편성되었다.

4. 장애인예산 운용방식의 개혁 필요성

현재의 장애인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2017년도의 경우 그 비중이 무려 72%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예산은 보건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사회적 지위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정책, 여성장애인의 출산·육아지원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등 다양한 부처에서 운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보조공학기술에 대한 선도적 기술투자,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향유권 확대를 위한 방송위원회의 각종 서비스도입, 장애인인 공무원 응시생을 위한 각종 시험 편의제공이나 장애인 공무원 재직자를 위한 교육훈련,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등 당장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장애인예산 분야가 각 부처에 편재(遍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예산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요구를 직접 반영하고 확대해가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 OECD국가의 예산개혁과정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고객주도예산(customer-driven budget), 사명지향예산(mission-oriented budget), 부서초월예산과정(cross-department budgeting) 등의 다양한 예산운용방식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의제 속 장애인의 인권

글 강수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장애보고서 2011>을 보면 전 세계 인구의 15%인 약 10억 명이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증가, 의학발달, 노령화 등으로 장애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인권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격하되고 이들은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다행히, 국제 사회는 지적장애인권리선언(1971)과 장애인권리선언(1975)을 시작으로 세계 장애인행동계획(1980), 장애인권리협약(2006), 제3차 아태지역 장애인 10년(2013-2022)을 통해 장애인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데이터 수집 등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과 이행이 국제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속 장애’와 글로벌 쟁점의 하나인 ‘모두를 위한 도시’를 소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SDGs

MDGs(새천년개발목표)가 끝나가는 시점, 국제 사회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SDGs 17개 사항에 합의했다. MDGs의 후속사업인 SDGs는 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각국 공통의 요인들을 동시에 완화하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SDGs는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국의 책무를 강조하고 사회, 경제, 환경 및 거버넌스 등 종합적

인 접근을 시도한다. 또 구조적 문제와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체제변환적이고 포용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논의 끝에 SDGs에 장애(인) 관련 세부지표들이 포함되었다. 아래 글상자에서 보는 목표 4(양질의 교육),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0(불평등 감소),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17(지구촌 협력)이 대표적이고, 이 밖에도 ‘취약계층’ 관련 목표에도 장애(인)가 언급된다.

목표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 소수민족,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인구에게 모든 수준에서 동등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접근을 보장한다.

목표 4.7a: 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축 및 개선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목표 8.5: 2030년까지 모든 여성, 남성, 장애인, 청년을 포함하여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목표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고 확대한다.

목표 11.2: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도로 안전을 개선하며,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목표 11.7: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목표 17.8: 2030년까지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춰 모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양질의 시기적절한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국가상황과 관련된 속성 등에 따라)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크게 확대한다.

MDGs는 장애를 크로스커팅 쟁점(cross-cutting issue)으로 간주한다. 장애가 환경, 젠더, 거버넌스 같이 빈곤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국제 원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쟁점이라는 말이다. 반면, SDGs는 장애와 관련하여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원칙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장애포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

전히 장애 관련 언급이 적고, SDGs 이행 메커니즘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민단체의 참여와 민관협력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어서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 중 ‘모두를 위한 도시’를 소개하겠다.

모두를 위한 도시

UN 경제사회부는 2014년에 발간한 ‘세계 도시화 전망 World Urbanized Prospects’를 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6%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 전문가들은 2016년 ‘제3차 정주 및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글로벌 회의(HABITATIII)’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했다. 이 의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의 약속, 효과적인 이행, 후속조치 및 점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SDGs 목표11(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활환경 조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6월 14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접근성을 갖춘 도시 개발이 사회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하며 통합적 접근 및 유니버설 디자인(UD) 전문성 제고를 촉구했다. 존 메이스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렇게 정의한다. “추가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나 최저 비용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능적이고 매력적인 건물, 시설,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

장애인 당사자가 계획 단계부터 모니터링 과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면, 2016년 엑세스 시티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투루즈(Toulouse)시처럼 스마트 시티이자 모두를 위해 편한 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포괄적인 개발을 위한 우리의 역할

2017년은 SDGs 이행 1주년이자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즉 ‘인천전략’을 중간 평가하는 해이다. SDGs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만든 공통 목표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또 ‘인천전략’이 종료되는 2022년까지 그 이행을 개선해야 한다.

‘인천전략’ 중간평가와 SDGs 이행 경과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국제 및 지역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각국의 민간·정부부문과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고안하면서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려면 민관협력이 필수적인데, 거버넌스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된 적이 있었다. 올 7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검토 대상국들은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최종 채택문에 장애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대목은 ‘데이터 수집 항목’ 한 군데 뿐이었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견해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활발한 민관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장애포괄적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장애인 사회는 장애 의제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지적해 개선을 요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여러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만의 간담회가 아닌 시민단체도 함께 하는 간담회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거버넌스 구축 강화와 민관의 협력도 강화해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21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Ⅲ’ 총회는 ‘새로운 도시 의제’를 공식 채택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활동가의 눈으로 본 '생활속 모니터링'

글 이도훈 김포하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팀 대리



이도훈 씨가 장애인권강사 양성교육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동료 장애인을 지지하고 동료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장애인 연합조직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 '장관'이라는 곳에 발을 디딘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라는 곳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외에 밖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체 간 연대활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장관'에서 활동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말이 몸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장관'이라는 곳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항상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자립하려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장애인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운동을 하면서, 장애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격은 가족중심이며 복지의 문제를 사회적 권리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편향이 여전히 강한데, 이런 상황에서 자립생활에 입문했을 때 저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저는 선천적인 저신장 장애인입니다만, 2007년도에 허리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신체적으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2013년도부터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게 되니 사회 곳곳의 장애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당사자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애가 '사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쉽게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보행신호체계에 대해서 경찰관과 대화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일, 하지에 장애가 있는 나 같은 사람이 휠체어가 없어서 집에만 있게 된다면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휠체어가 생겨 일단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장애'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다니다가 계단이나 턱을 만나 더 이상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게 되는 순간 다시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나 턱에 경사로를 설치한다면 저의 '장애'는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센터 앞 큰 사거리의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보행이 불편한 동료 장애인이 초록불이 켜있는 시간이 짧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보행신호 주기가 연장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은 물론이고 어르신, 임산부, 유아 등 많은 이동약자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우' No! '장애인' Yes!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에서 열린 지하철 품평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모형을 보던 중, 제 눈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지하철 내부 안내 문구에는 '장애우(障礙友)'란 단어가 딱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장애우'라니요?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부르는 말입니까? '장애인의 친구'란 뜻의 '장애우'란 용어는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장애 당사자가 자신을 '장애우'라고 지칭한다면 그것은 형용모순이 됩니다. 비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비장애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애인을 위한답시고.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 장애인이고, 또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우리 사회 비장애인들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장애인을 '장애우'라 불러주면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줄 착

을 리 만무하고 시설 주변을 운행하는 저상버스도 태부족이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탈시설, 탈시설”하지만 실상은 그런 말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거주시설에서 생을 쓸쓸하게 마감하는 장애인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 경기도에서 행복한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주제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듣는 통합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나 인권과 복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활동들이 모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장애는 단순히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자리 잡아 간다면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 선배 장애인 활동가들의 노력과 활동으로 오늘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저상버스와 콜택시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은 동정과 시혜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편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활동의 지향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에서 한걸음 더!

〈스파이더맨: 홈커밍〉

글 류미레 푸른영상 다큐멘터리 감독

블 시리즈의 영웅들은 쉽 없이 조명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영웅이 그 출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호에 소개할 영화에는 그런 마블 시리즈의 영웅이 등장하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첫 등장이 1962년이었는데 50년이 넘는 후에도 또 새로운 시리즈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올 여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는 어린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데 세계적으로 강력한 흥행돌풍을 일으켰지요. 15살 소년의 유쾌발랄 액션에 온 세계가 환호했는데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350만 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마블매직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주인공 스파이더맨은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 스파이더맨 피터 파크는 〈시빌워〉에서 처음 등장했지요. ‘토니 스타크’에게 발탁되어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피터는 첫 등장부터 참 귀여웠어요. 토니 스타크의 제안을 잠깐 고민한 후 거절하는데요, 그 이유가 숙제 때문이었거든요. 그 때가 14살이었고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15살이니 아직 중2병 와중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2병의 증상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는 생각에 취해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피터는 세상을 구하는 경험을 실제로 해봤으니 슈퍼중2병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빌워〉에서 임시로 어벤저스의 일원이 되었던 경험을 했던 피터에게는 이제 숙제보다 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피터를 임시 어벤저스팀으로 끌어들이던 ‘토니 스타크’는 피터에게 새로운 수트를 선물

하면서도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허세와 정의감으로 푹푹 뭉친 피터는 세상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 '벌처'에 맞서려 합니다. 숙제보다 세상을 구하고 싶은 어린 스파이더맨이 과연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어린 스파이더맨 피터는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변성기 전이라서 그런지 목소리도 옅되고 악당과의 싸움보다는 학교생활의 비중이 큼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의 존재감이 정말 강력한데요, 수다쟁이 절친 네드는 피터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큰 비밀을 아는 친구가 수다쟁이라는 게 피터의 골칫거리지요. 가만히 보면 네드나 피터는 학교에서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부에 있는 학생들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다니는 학교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특수목적고에 해당하는 과학고 같은 곳인데요, 네드와 피터는 주로 조각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놀입니다. 조각 퍼즐을 맞추며 놀려고 피터 집으로 왔던 네드가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고 몰래 들어오는 피터를 목격하는 거죠. 그때부터 "너도 알 낱아?", "거미처럼 독도 뱉어?"와 같은 엉뚱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유쾌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10대 소년이니 당연히 짝사랑하는 상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학교 내 퀸카로 유명한 리즈입니다. 영화 속 세계는 마블코믹스의 영웅들이 실제로 영웅인 곳인데요, 그래서 영웅들 별로 팬클럽이 있습니다. 체육시간에 리즈와 그 친구들은 각자 어떤 영웅을 가장 좋아하는가를 주제로 수다를 떨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리즈가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피터는 너

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어벤저스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리즈 외에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소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 중 한 친구의 입을 통해 우리들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었는데 얼굴에 흉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

어벤저스가 현실의 영웅인 판타지 세계에서조차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안면장애는 여전히 걱정이 더군요. ‘장애코드로 미디어읽기’를 진행하다보면 가끔씩 “뭘 그런 것까지 걸고넘어지느냐?”라는 타박을 받곤 하지요.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나선다는 말도 듣고요. 그런데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얼짱, 몸짱 신드롬이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현실을 잠깐 지나가는 저 대사를 통해서라도 짚어보고 싶어요.

보통의 관객인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화 속 등장인물들을 좋은 쪽과 나쁜 쪽으로 구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애코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첫인상이라는 이름으로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자들>에서 조사장의 수행원 이주환 실장이나 <봉이 김선달>에 등장하는 청나라무사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것처럼요.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당 편에 서있는 거죠. 아니면 악당이라면 얼굴에 흉터 하나쯤은 있게 캐릭터 설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첫인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나 얼굴과 몸만 예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얼짱문화는 ‘예쁘다’는 획일화된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죠. 비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규격화된’ 용모와 몸만을 최고로 치는 얼짱 문화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몸을 가진 장애인들을 소외시킵니다. 소외시킬 뿐 아니라 ‘인상’이라는 이름



으로 배척한다는 게 더 큰 문제죠. 한 편의 영화라면 최초의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라도 있겠지만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고 인상으로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서로 다름이 인정되는 세상, 서로 다른 ‘몸’이 인정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들의 수다 때문에 살짝 불편하기는 했지만 서로 다름이 인정되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에서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캐스팅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인종, 민족, 나이를 가진 인물들이 중요 역할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셸>이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 · 무조건 백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 논란에 휘말렸던 것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캐스팅이었습니다. 이런 칭찬에 대해 존 왓츠 감독은 의아해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터 파커는 퀸즈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퀸즈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사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 있는 모습들이 영화에 반영되기를 원했습니다.”

소녀들의 수다에 스파이더맨의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등장하는 것 또한 실제의 반영이라고, 훈남에 열광하는 사춘기 소녀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문화적 다양성 뿐 아니라 몸의 다양성까지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살짝 더해봅니다. 이렇게 시시콜콜 영화에 대해 뒷담화를 해보는 것, 재미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올바름과 재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장애코드로 영화를 읽는 재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한번 더 감상하면서 이런 쫄깃한 재미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포럼은 지금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지난 7월 27일(목)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는 모니터링센터 소장과 연구원, 김재왕변호사, 박종운변호사, 이상훈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7월 31일(월) 정신장애인일상생활차별 모니터링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전문가의 합동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정신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가 인터뷰 녹취록 분석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지금



지난 8월 8일(화) “장애긍정모형”에 기초한 장애인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기획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는 교재개발 방향 및 구성 초안공유를 목적으로 하여 집필자 구성 논의와 향후 사업추진 일정 확정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로는 오창익 인권연대사무국장, 장애인아카데미 윤석권처장, 동국대학교 철학과 홍윤기교수, 장애인아카데미 황은선팀장,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소장, 김용구 연구원, 정수미연구원이 함께 했다.

(사)서울장애인인권포럼



지난 8월 21일(월)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자문위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과 함께 제 1차 중간보고(장애인건강권 실태조사 및 분석과 장애인자기주도 건강관리모델개발 용역)를 진행하였다.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제12회

· 이미지 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출품부문

자유주제

- 제품 및 인터랙션 디자인
- 환경·건축 및 실내 디자인
- 콘텐츠 및 UX디자인

특별주제

- 공동주택 주거환경디자인

시상내용

자유주제

| | | |
|--------------|----|---------|
|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 1점 | 500만원 |
| 한국복지대학교총장상 | 1점 | 300만원 |
| 최우수상 | 3점 | 각 150만원 |
| 우수상 | 3점 | 각 50만원 |
| 장려상 | 6점 | 각 30만원 |
| 특선 | 다수 | - |
| 입선 | 다수 | - |

특별주제

| | | |
|-----------|----|---------|
| 대상(SH사장상) | 1점 | 300만원 |
| 최우수상 | 1점 | 200만원 |
| 우수상 | 3점 | 각 100만원 |
| 장려상 | 5점 | 각 30만원 |
| 특선 | 다수 | - |
| 입선 | 다수 | - |

공모일정

| | |
|-------|---|
| 1차 예선 | 2017. 9.27(수) ~ 10.12.(목) 18:00 마감 / 온라인 접수 |
| 2차 본선 | 2017.11.13.(월) ~ 11.17.(금) 18:00 마감 / 우편 및 방문접수 |
| 최종발표 | 2017.12.1.(금) |
| 전시회 | 2017.12.18.(월) ~ 12.22.(금) 서울시청 시민플라자(예정) |
| 시상식 | 2017.12.21(목)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예정) |

참가자격

- 제한 없음 / 개인 및 3인 이내의 팀(1인 1팀 소속)

기타

- 공모전에 관한 모든 변경 및 추가사항들은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홈페이지(www.udcontest.com)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방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특별주제 당선자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문의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Tel : 02)833-3095